瑞山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 1998. 12. 17

나. 提 出 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8. 12. 18

라. 上程日字 : 1998. 12. 21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會計課長 韓基宅)

가. 提案理由

o 물품관리 관련조례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간 동일성을 유지하고 바뀐 시산하 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

나. 主要骨子

o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물품관리 사무위임의 범위확대

o 물품불용결정시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모두 도산하 시·군 자치단체간에 소요조회토록 한 것을 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o '98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물품관리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시 산하기관의 명칭을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o 물품의 불용결정시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모두 도산하, 시·군 자치단체간에 소요조회토록 한 것을 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만 소요조회토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여도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생 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40 호
의 결 년 월 일	1998. 12. 24. (제 16 회)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재출년월일	1998. 12. 17.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

제출년월일 : 1998. 12. 7.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개 정 이 유

○ '98 정기 재물조사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동일성을 유지하고 시 산하기관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 요 골 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물품관리사무위임의 범위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장으로 확대하였음(안 제4조)

○ 물품의 불용결정시 소요조회 대상을 종전에는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은 모두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간에 소요 조회토록 한 것을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의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만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개정함(안 제17조 제3항 제2호)

○ 본 조례중 사업소, 읍·면·동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하였음
(안 제1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내지 제3항, 제28조 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

○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도록 함(안 제28조 제1항)

□ 참 고 사 항

○ '98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개선대책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사업소,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중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을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2호중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을 "1천만원미만 5백만원 이상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사업소, 읍·면·동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소, 읍·면·동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 ---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장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 ---------- ---------- ----------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② (생략)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단위 당 취득가격(장부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2. ----------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2조(일시보관) ① ----------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
② (생략)	② (현황과 같음)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생략)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
④ 사업소, 읍·면·동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이----------
제28조(물품출납원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사업소, 출장소 포함)이 기타 사업소,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출납원의 검사) ①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30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 ①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사업소, 읍·면·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